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4.

발 의 자 : 안상훈 · 이종배 · 이종욱
진종오 · 안철수 · 배준영
김승수 · 이양수 · 김성원
한지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.

그런데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,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,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,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 신청 전에 수급권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.

이에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

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덧붙여 수급권자의 발굴·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노력 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21조, 제23조의2 및 제31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32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미리 그 직권 신청 계획안(제2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 계획안을 포함한다)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.

1. 수급권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
2.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3. 수급권자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

4. 그 밖에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대한 직권신청 계획안의 심의 요청 및 그 심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23조의2제1항 중 “제21조제3항”을 “제21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적극행정 인센티브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발굴·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, 포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급여의 신청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1조(급여의 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미리 그 직권신청 계획안(제2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 계획안을 포함한다)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수급권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</u> <u>2.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</u></p>

<신 설>

③ ~ ⑤ (생 략)

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
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
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⑦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방법
·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

3. 수급권자가 「사회보장급여
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의
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
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
구성원인 경우

4. 그 밖에 수급권자가 심신장
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
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
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경우

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에
대한 직권신청 계획안의 심의
요청 및 그 심의 결과의 통보
등에 관하여는 「사회보장급여
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
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7항
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.

⑤ ~ ⑦ (현행 제3항부터 제5
항까지와 같음)

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

⑨ 제5항-----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2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
보건복지부장관은 「금융실명
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
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
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
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
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
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
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
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
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
따른 금융회사등, 「신용정보의
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
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
에게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
보험정보(이하 “금융정보등” 이
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
있다. <단서 신설>

--.

제23조의2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
제21
조제5항

----- . 다만, 제21조제3
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
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

② ~ ⑦ (생략)
<신설>

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31조의2(적극행정 인센티브) 국
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
자의 발굴·지원 또는 수급자
의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
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
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
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,
포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
하는 바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
수 있다.